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 사 건 명 15-직권-00001 학생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 피 해 자 1. ○○○(2014년 ▣▣고등학교 ○학년 재학)  
2. ▣▣고등학교 ○학년 학생들(2014년, 현재○학년 재학)
- 피 조사 자 1. ●●●(위 학교 교사, 2014년 ○학년 ○반 담임)  
2. ◆◆◆(위 학교 □□ 교사)  
3. ■■■(위 학교 □□ 교사)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들은 피해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들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처분을 함에 있어, 교사들마다 체벌의 정도 및 양태가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 정도를 감안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 학교 교장 ●●●은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에 대하여 징

계할 것을 권고한다.

다. 위 인권침해행위는 사립학교의 교원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위 가. 나.항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라. 피조사자들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과 관련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피조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학교 전반에 만연한 체벌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2. ☒☒고등학교장에게,

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학교구성원들(교직원, 학생)의 체벌(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학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I. 직권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4. 12. 26.(금)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을 체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초조사 결과, 민원의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다수의 교사들에 의해 다수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 피해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교육센터'라 한다)는 위 사안이 직권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직권조사의 방법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5. 1. 5.(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같은 해 3. 18(수), 19.(목), 23.(월), 26.(목) 관련자 면담조사, 관련 서류조사, 학생회 간담회, 학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II.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 1.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가. 피해자1.과 피해자 1.의 부친의 주장

2014. 3.경부터 위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들이, 수시로 ○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나무주걱 등으로 위 학생들의 허벅지를 때리는 체벌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피해자 1.은 위와 같은 체벌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생겨 자퇴를 하고자 하였는데, 현재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이다.

피해자 1.은 위 학교의 다수 교사들이 행한 체벌행위로 인해, 분노감 및 이와 동반된 행동을 하게 되는 우울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014. 12. 1.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은, 피해자 1.이 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피해자 1.에게 꾸준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단을 하였다.

## 나. 피조사자들의 주장

### 1) 피조사자 1.

2014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많이 체벌하였다. 항상 학년 초에 “지각과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는데, 학생들이 지각하거나, 시험치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체벌하였다.

☒☒고등학교는 ‘사랑의 회초리’를 정해 놓았는데, 손잡이 너비 4-5cm 정도, 두께는 0.5cm 정도, 길이는 60cm 정도 되는 나무주걱을 교무실에 놓고 학생들을 혼내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본인은 국화를 지지하는 지지봉을 사용하여 학생의 종아리를 2-3회 정도 체벌했다.

본인이 맡은 ○학년 ○반 학생들은 7시 50분까지 등교해야 하는

데(학교 규정은 8시 등교), 학생들이 늦으면 60cm 가량의 나무주걱으로 허벅지 뒷부분을 2-3대 정도 때렸다. 학생들을 체벌하면 그 체벌 도구 및 강도에 따라, 한 학년정도 지나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교정 효과가 있었다.

2014. 3. 경 학급의 면학분위기를 위해, 교실에 와서 떠들고 있는 다른 반 학생의 뺨을 한차례 때린 적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학년 ○반 학생들(15명가량)이 참고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목 교사에게 혼나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들을 엎드려뺨쳐 시키고 60cm 가량의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위 학생들의 허벅지 뒷부분을 3대씩 때렸다.

2014. 10. 초 피해자 1.의 학부모가 “피해자 1.을 때리지 말고 다른 별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 1.이 하는 행동을 보고 ‘버릇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였고, 학부모가 위와 같이 요청한 이후에도 피해자 1.이 지각을 자주 하여, 생활지도의 목적과 다른 학생들과 형평을 고려하여, 방송실에서 피해자 1.과 다른 학생들의 허벅지 뒤편을 5대씩 때렸다.

2014. 12. 29. 위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본인의 체벌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인 피해자 1.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2015. 1. 9. 본인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장 명의의 경고장을 받았다.

## 2) 피조사자 2.

학생들이 과제를 안 해왔을 때 주로 체벌을 하는데, 수업시간에

쓰는 드럼채와 비슷하게 생긴 30cm정도 나무재질의 지휘봉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 앞부분을 1대씩 때렸다. 보통 한 회당 3-5명 정도 학생을 체벌하였으며, 지휘봉은 더 이상 체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 말쯤 버렸다.

수학교과시간에 수학책과 부교재 두 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2014. 11. 중순경 ○학년 ○반 수학교과시간에, 학생들 중 십여 명이 수학책을 준비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학생들이 책을 빨리 가져오게 하기 위해, 순서대로 위 지휘봉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를 때렸는데, 피해자 1.이 가장 늦게 왔다. 피해자 1.이 1대를 맞고 대들어 피해자 1.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 1.이 계속 불손한 태도를 보여, 순간적으로 흥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1.의 뺨을 때렸다.

2014. 12. 29. 위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본인의 체벌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인 피해자 1.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2015. 1. 9. 본인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장 명의의 경고장을 받았다.

### 3) 피조사자 3.

시장에서 60cm가량의 나무주걱을 일괄 구매하여, 2014. 3. 경 1학년 담임을 맡은 각 선생님별로, “▣▣▣ 교사-을지문덕, ●●● 교사-원균, ●●● 교사-권율 등”으로 나무주걱에 캐릭터화해서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나무주걱을 나누어 주었다.

위 나무주걱에 그림을 그리고 나누어준 이유는, 본인이 2014학년

도에 ○학년 담임을 하면서 전체적인 학습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었다.

체벌도구로 사용된 60cm가량의 나무주걱은, 2014학년도 이후 학교 교무실에서 수거하여 미술실에 봉인하였다가, 2015. 3. 19. 현재 본인이 사용하던 나무주걱(일명 을지문덕) 1자루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였다. 본인은 수업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교탁위에 나무주걱을 두고 있지만, 위 주걱에 그림을 그려 조형적인 요소를 주었으며 학습효과용으로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즐거나 수업분위기를 망치고 장난을 하는 경우에, 학생을 체벌한 적이 있으며, 나무주걱으로 손바닥 부위를 가격하는 정도의 체벌을 하였다. 학생들의 수업성취도를 위해 드물게 체벌하였으며, 나무주걱 외에 손이나 발 같은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한 적은 없다.

## 다. 참고인들의 주장

### 1) ○○○(위 학교 교장)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학생인권보호 및 체벌금지와 관련하여 교육한 것을 나이스에 기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마다 직원조회를 하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였고, 교육청 방침에 따르는 학생 훈육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다.

2014년 ☒☒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체벌 규정이 삭제되지 않은 이유는, 학생부에서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학교들의 생활규정을 수집하여 종합하여 만들었는데, 그 과정

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확인하였다. 2015년에는 오류를 바로잡아 절차에 따라 규정의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교사들이 체벌을 한 사실은,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여 알게 되었다. 피조사자 1., 2.가 피해자 1.을 체벌한 것을 알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위 피조사자 1., 2.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교직원들이 언어순화를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조사자 3.이 2014년 초에 나무주걱을 일괄 구입하여 ○학년 담당교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교사들이 이를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 2) ●●●(위 학교 교감)

☒☒고등학교에서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학생인권보호 및 체벌금지와 관련하여, 연수를 자주 실시하지는 못하고 주로 직원회의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으며, 2014년 12월에 이와 관련하여 전 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교사들의 체벌행위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대뿌리를 소지하는 것도 주의를 주고 있다. 다만, 드럼채 정도는 지시봉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무주걱의 경우에도 소리만 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 본인이 저녁 자율학습시간 지도를 하다가, 교사들이 나무주걱으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을 보고, “때리지 말고 벌을 쥐라”고 교사들에게 말하였다.

피조사자 3.이 2014학년 초에 나무주걱을 일괄 구입하여, ○학년 담당교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2014학년 초에 나무주걱 10개를 구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주걱은 때릴 목적은 아니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 라.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문(2015. 3. 30.) 내용 요약

※ 학생 설문 중 무응답을 제외한 ○학년 ○반(22명), ○반(18명), ○, ○, ○반(16명) 학생의 체벌 관련 의견을 정리함.

### 1) 교사의 체벌 및 폭언 행위 내용

#### 가) 피조사자 1.

- 빗자루로 때리거나, 학생의 뺨을 때렸다.
- 2014년에 종아리인가 허벅지를 맞아서 피멍이 들었다.

#### 나) 피조사자 2.

- 지나가다가 학생들을 때린다.

#### 다) 피조사자 3.

- 2014년 ○학년 ○반에서, 시험이 끝난 후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반 전체에게 의자위에 올라가서 팔을 올린채로 의자와 엉덩이의 간격을 1cm로 하라고 하며 벌을 내렸다.

- 2014년 과제 미제출시 체벌을 했다.

#### 라) ○○○ 교사

- 수업시간에 졸면 종아리를 때린다.
- '평등은 니네 집에서 찾아라', '어디서 건방지게 공평을 찾아' 등 폭언을 했다.

- 수업시간에 아파서 옆드려 있었는데 발로 차고, 이후 교무실로 불러 뺨을 4대 정도 때렸다.

- 학생의 머리를 가격했다.

- 욕설 비난 등을 하고, 손으로 한 아이를 무차별 폭행한 적도 있으며, 항상 욕을 입에 달고 사신다.

마) ○○○ 교사

- 옆드린 상태에서 발로 찼다.

바) ○○○ 교사

- 2014년 1학기말 장난을 친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5~7번 부딪혔다.

- 2014년 10월 수학이동수업시간에, 주먹으로 학생의 이마를 수차례 가격했다.

- 2014년 학생 뺨을 때렸다.

사) ○○○ 교사

- 2014. 1학기 여름 경 체육시간에 운동장 갔다 왔다고, 몽둥이로 한 학생은 2차례, 다른 학생은 5차례 엄청 세게 가격했다.

아) ○○○ 교사

- 2014년 겨울에 잘못이 없음에도, “어디서 거짓말을 치냐 싸가지 없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 강당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옷매무새를 고치라고 지시한 후 바로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여, 친구를 조금만 기다리고 간다고 대답하니, “가라고 하는 말 못 들었냐”며 위협적인 표정으로 내쫓았다.

자) ○○○ 교사

- 보충수업시간에 개××야, 씨××야 등 욕설을 하고, 학생을 발로 찼다.

- ×××, ××놈 등 욕설을 한다.

- 발로 차고 욕을 함, 욕설이 난무한다.

- 수업시간에 잔다고, 쪽지를 돌리다 걸려서 학생 뺨을 때리고 배를 쳤다.

- 책을 안 사온 학생을 때렸다.

- 2015년 2월 다른 반 종례를 대신할 때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했다.

- 2015년 3월 둘째 주에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 2) 교사를 특정하지 않은 체벌 및 폭언 행위 내용

- 시험 보고 나서 틀린 것대로 대수를 정해 맞았다.

- 수업시간에 잠을 잤다고 뺨을 맞았다.

- 수업시간에 책을 안 가져왔다고 맞았다.

- 야자시간 시작 전에 홈베이스 갔다 오는데 늦었다고 옆드려서 맞았다.

- 야자시간에 화장실 갔다고 맞았다

- 핸드폰 안냈다가 걸려서 맞았다.

- 야자시간 때 떠들었다고 맞았다.

- 야자시간 끝나기 1분전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고 맞았다.

- 야자시간 끝나기 전에 가방을 썼다고 맞았다.

- 단어 못 외었다고 수업시간에 맞았다.
- 야자시간에 귓속말로 이야기 했다고 나와서 엎드려서 맞았다.
- 그냥 별 이유 아닌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로 많이 맞았다.
- 짐 나르는데 가벼운 거 들고 있었다고 선생님께서, “야 ×발 너는 그것만 들고 가냐 새끼야”라고 했다.

### 3) 체벌을 인정하는 의견

- 무서워서 안 적는 게 절대 아니고 진짜 없어서 안 적는 겁니다. 저는 대[ ]의 교육방침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입니다. 선생님께서 괜히 때리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맞을 행동을 안 하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대[ ]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자기 먼저 잘 행동하고서 체벌하지 말자는 말을 하지 맙시다.

- 선생님들 다 착해요 ‘절대로’ 강요받지 않았어요.
- 이런 거 왜 해요 체벌을 할 땐 때려야죠. 교육차원에서는 무조건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혼내서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학생의 말만 듣는 것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벌찬성
- 체벌제도는 부활되어야 합니다.
- 체벌을 당한 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을 위해서 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대드는 학생 너무 많습니다. 징계 처분한다고 해도 무섭지 않

다고 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 3. 인정사실

피조사자들의 문답서, 피해자의 면담기록,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조사자 1. 관련

1) 2014. 3. 경, 위 학교 ○학년 ○반 교실에 와서 떠들고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반 학생의 뺨을 때렸다.

2) 위 학교의 규정상 8시까지 등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학년도에 담임을 맡은 위 학교 ○학년 ○반의 학생들을 7시50분까지 등교하게 하고, '60cm가량 나무주걱'(이하, "나무주걱"이라고 함)을 사용하여 지각한 학생들의 허벅지 뒷부분을 2~3대 정도 때렸다. 특히, 피해자 1.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한 달에 2~3회 정도 체벌하였다.

3) 2014학년도 ○학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에 따른 학생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성적이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면, 나무주걱 또는 조릿대나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종아리를 2~3대 때렸다.

4) 2014. 3. 경, ○학년 ○반 학생들(15명가량)이 참고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목 교사에게 혼나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들을

옆드려뻗쳐 시키고,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 뒷부분을 3대씩 때렸다.

5) 2014. 10. 초 피해자 1.의 학부모가 “피해자 1.을 때리지 말고 다른 벌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해자 1.의 지각을 이유로, 방송실에서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피해자 1.과 지각한 다른 학생들의 허벅지 뒷부분을 5대씩 때렸다.

6) 2014. 12. 24.경 피해자 1.에 대한 체벌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안보고가 되었고, 같은 달 29.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자 1.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정되었으며, 피조사자 1.은 2015. 1. 9. 학교장으로부터 위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나. 피조사자 2. 관련

1) 학생들이 과제를 안 해온 경우에 주로 체벌을 하는데, 드럼채와 비슷하게 생긴 ‘30cm 가량의 나무재질의 지휘봉’(이하 “지휘봉”이라 함)을 사용하여, 보통 한 회당 3~5명 정도 학생들의 허벅지 앞부분을 1대씩 때렸다.

2) 2014. 11. 14. 7교시 위 ○학년 ○반 수학교과시간에, 수학책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십여 명의 허벅지 앞쪽을 지휘봉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학생들에게 책을 가져오도록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온 시간 순서대로 1대씩 추가하여 학생들을 때렸다. 피해자 1.이 가장 늦게 도착하자, 피해자 1.에게 “6대를 맞으라”고 말하고, 피해자 1.의 허벅지 앞부분을 1회 때렸다. 피해자 1.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1.이 피조사자 2.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1.의 뺨을 때렸다.

3) 2014. 12. 24.경 피해자 1.에 대한 체벌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안보고가 되었고, 같은 달 29. 경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자 1.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정되었으며, 피조사자 2.는 2015. 1. 9. 학교장으로부터 위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다. 피조사자 3. 관련

1) 피조사자 3.은 2014학년도 위 학교 ○학년 부장을 맡았는데, 2014. 3. 경, 위에서 사용된 나무주걱을 시장에서 일괄 구입하였다. 피조사자 3.은 나무주걱의 명칭으로 캐릭터 및 이름을 그려 넣어 제작하여, 교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나무주걱을 받은 일부 교사들은, 이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였다.

2) 체벌도구로 사용된 나무주걱은 2014학년도 이후 학교 교무실에서 수거하여 미술실에 봉인하였다가, 2015. 3. 19. 현재 피조사자 3.이 쓰고 있는 나무주걱(일명 을지문덕) 1자루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였다.

3) 학생들이 졸거나, 수업분위기를 망치고 장난을 하는 경우에, 을지문덕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렸다.

#### 라. 피해자 1. 관련

1) 2014. 12. 1.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사 ㉡㉡㉡은, 피해자 1.이 우울장애(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F32.9)가 발병하였다는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서, 피해자 1.에게 꾸준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2) 피조사자 1., 2.가 피해자 1.을 체벌한 사안과 관련하여, 2014. 12. 29. 위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위원회는 당시 ○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1.에 대해 “학교폭력(교사체벌)로 인한 환경전환”을 결정하였다.

3) 2015. 1. 9. 피해자 1.은, “학교폭력(담임교사의 체벌)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불신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우므로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16. 피해자 1.의 전학이 결정되었다.

#### 마. 기타

「㉣㉣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는 체벌이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체벌의 기준과 대상을 정해 체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 4. 판단

## 가.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조례 제9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45조(벌의 종류)는,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6조(체벌기준), 제47조(체벌대상)에서 기준과 대상을 정해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조례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하위 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규정에 따라 체벌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해당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학생은 모

욕감 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이러한 체벌행위는 인격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피조사자들의 일상적 체벌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가. 나. 다. 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조사자들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일상적으로 나무주걱이나 다른 도구(지시봉, 조릿대나 무 등)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와 무릎뒷부분을 때리거나, 손을 사용하여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체벌행위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를, 얼마나, 그 정도 등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체벌이 위 학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체벌은 직접 당하든지 당하는 것을 목격하든지 체벌로 인한 육체적 고통의 차이가 존재할 뿐, 그로 인한 심리적 효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이런 경우에 “폭력(체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014. 12. 피해자 1.에게 분노로 인한 우울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은, 피해자 1.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사들의 “폭력에 노출”된 것에 일정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은 해 10.경 피해자 1.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인 피조사자 1.에게 ‘피해자 1.을 체벌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1.이 체벌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같은 해 12. 29. 개최된 위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1.의 부친이 ‘정신과 상담 중 피해자 1.이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피해자 1.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것은 교사의 체벌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1.에게 정신질환 증상이 생기고, 환경전환을 이유로 한 전학을 가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1.에게 직접 체벌을 한 교사와 피해자 1.에게 직접 체벌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피해자 2.)을 체벌(해당 상황을 피해자 1.이 목격)한 교사 모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조사자들은 피해자들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나무주걱 및 손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1. 및 다른 학생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체벌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침해

② 체벌을 당했던지,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모욕감 및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조례 제3조) 침해

③ 교사들의 체벌로 인해 피해자 1.이 정신과 진료 등을 받았으므로 건강권(조례 제25조) 침해

④ 교사들의 체벌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 1.의 학습권(조례 제5조) 침해

피조사자들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들에게 대한 신분상 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조사자들이 행한 체벌의 정도 및 양태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정사실에 나타난 정도를 감안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여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장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대하여

피조사자들은, 학생 생활 교육의 방법으로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체벌을 하였는바, 이는 피조사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조사자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살펴보았을 때, 평소 체벌에 대한 무관심, 체벌의 효과에 대한 과신, 체벌도구에 대한 희화화 등 피조사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알 수 있다.

“국화지지대 혹은 나무주걱 사용 등 강도에 따라 한 학년정도 지나면 교정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피조사자 1.), “체벌에 관한 규정을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니다”(피조사자 3.), “제가 나무주걱을 전체적으로 구매하여 ○학년 각 선생님별로 캐릭터화 해서 나무주걱에 그림을 그리고 나누어 드렸습니다”(피조사자 3.),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나무주걱을 보고)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캐릭터가 담겨 있어서 애들한테도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엄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학교 교사)

또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벌을 할 땐 때려야죠. 교

육차원에서는 무조건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혼내서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학생의 말만 듣는 것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학교에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위와 같은 피조사자들 및 교사들의 체벌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체벌에 대한 인식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학교 차원에서, 교사들의 체벌(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학생들도 체벌(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학교규칙에 체벌 규정이 존치하는 것에 대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은 체벌이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체벌의 기준과 대상을 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관련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학교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기타

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과 관련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조사자들의 체벌 행위 및 피조사자들 외의 다른 교사들의 체벌행위가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피조사자들

외의 다른 교사들도 체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학교 전반에 만연한 체벌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체벌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30.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별지 :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